

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8. 2. 14

3. 提案理由

- 國有財産관리제도와 公有財産관리조례에 의한 公有財産 관리제도와의 불균형한 사항을 보완·개정하고,
- 國家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公有지를 工場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.

4. 主要骨子

-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 재산을 아파트형 工場,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, 중소기업자의 工場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工場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2조).
-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로 개정함(안 제23조).

5. 檢討意見

- 본조례 개정조례안중 제22조의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시불로 납부하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,
- 개정조례안 제23조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중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토지에 건물이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25/1000로 규정되어 있으나, 현행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는 공유재산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은 '81.4.30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/1000, '81.5.1이후 건물이 있는 토지는 50/1000으로 되어 있어서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사용요율이 불균형으로 인한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국유재산법상의 요율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요율이 균형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며,
-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,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